

부천시 장수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

1. 심사경과

가. 제안일자 및 제안자 : 2007년 10월 9일 부천시장 제출

나. 회부일자 : 2007년 10월 10일

다. 상정 및 의결일자

- 제139회 부천시의회(임시회)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(2007년 10월 18일)
상정 의결

2. 제안 설명 요지

(제안 설명자 : 가정복지과장 윤순중)

□ 제안이유

- 2007. 4. 25 기초노령연금법이 제정·공포되어 2008. 1. 1부터 65세 이상 일정금액 소득이하 노인에게 기초노령연금이 지급됨에 따라 장수수당 지급대상에서 기초노령연금 수급자를 제외하고, 그 밖의 조례규정상 불부합 되는 용어를 정비하고자 조례 일부를 개정 하려는 것임.

□ 주요내용

- 가. 장수수당 지급제외자에 기초노령연금수급자를 포함함.(안 제3조 제1항)
- 나. 조례규정상 불부합되는 용어를 정비함.(안 제1조~제9조)

3. 질의 및 답변요지

질의 내용	답변 내용
<p>○ 기초노령연금제도는 생활안정을 목적으로 하는 국가적 사회복지제도이고, 장수수당 제도는 경로효친의 사회적 분위기 조성을 위한 부천시 자체 복지 제도로써 서로 입법취지가 다른데 지급 대상을 축소하는 것이 타당한가?</p> <p>○ 보건복지부 현금급여제도 일원화 지침에는 지급대상을 확대하거나 급여인상, 신설을 금지하고 있으며, 축소하는 방침은 아닌데 굳이 장수수당 지급대상을 축소하려는 취지가 무엇인지?</p> <p>○ 연금수급자를 장수수당 지급대상에서 제외하면 최저 기초노령연금이 2만원이므로 최저 연금수급자나 장수수당 지급자가 같은 수혜를 받게 되는 것 아닌가?</p> <p>○ 경로연금과 노인교통비가 기초노령연금으로 흡수되면 생활이 어려운 노인들은 수혜가 크게 늘지 않음. 장수수당이 지급된 지 1년 5개월 밖에 되지 않는 시점에서 축소하는 것이 과연 타당하다고 보는가?</p>	<p>○ 기초노령연금제도가 도입되면서 경로연금, 노인교통비 등 현금급여제도를 기초노령연금으로 일원화하는 정부방침이 정해져 있음.</p> <p>○ 기초노령연금제도 시행에 따른 재정 부담 해소를 위해 중복 지급되는 공적부조를 최소화 하겠다는 취지임.</p> <p>○ 그러함.</p> <p>○ 현금급여제도 일원화 방침에 따라 중복 지급되는 공적부조를 최소화하여 중·장기적인 재정부담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람.</p>

4. 토론요지

가. 찬성토론 : 없음

나. 반대토론 : 없음

5. 심사결과 : “수정의결”

6. 소수의견 요지 : 없음

7. 기타 필요한 사항 : 없음

부천시 장수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의안번호	관련 제162호
의결년월일	2007. 10. 26 (제139회)

제안년월일 : 2007. 10. 26.

제안자 : 행정복지위원장

1. 수정이유

- 장수수당 지급조례 개정안의 주된 내용이 2008. 1. 1부터 기초노령연금수급자는 장수수당 지급대상에서 제외하겠다는 취지이나
- 생활이 어려운 노인의 생활안정을 목적으로 도입되는 국가적 사회복지 제도인 기초노령연금제도와 경로효친의 사회적 분위기조성을 목적으로 도입된 부천시 자체 복지제도인 장수수당 제도는 그 입법취지에서 부터 성격을 달리하는 제도이며,
- 보건복지부 노인 현금급여제도 일원화 지침을 보면 장수수당과 기타 현금제도는 지급대상 확대와 급여인상, 신설을 금지하도록 하고 있어 장수수당 지급대상자를 축소하는 의미는 아닌 것으로 판단됨.
- 특히, 장수수당 제도가 시행된 지 1년 5개월 밖에 되지 않는 점, 기초노령연금제도가 아직 시행초기 단계에 있어 수혜대상이나 수혜액이 명확히 확정되지 않는 점, 장수수당이 그대로 지급되고 있는 다른 자치단체와의 형평성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제기되어
- 이러한 제반여건을 지켜보면서 장수수당 축소문제를 검토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에 따라 장수수당 제도를 현행대로 유지하는 것으로 수정하려는 것임.

2. 주요골자

- 장수수당 지급제외자중 기초노령연금수급자는 삭제함
(안 제3조 제1항)

부천시 장수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부천시 장수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

안 제3조 제1항중 “국외이주자 및 기초노령연금수급자”를 “국외이주자”로 수정함.

위의 수정부분 이외의 『수정하지 않은 나머지 부분은 개정조례안과 동일함.』

신·구조문 대비표

조 례 안	개 정 안	수 정 안
<p>제3조(지급대상 및 시기)</p> <p>①장수수당 지급대상자는 지급기준일 현재 <u>부천시 관내</u>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는 장수노인으로 한다. 다만, 장기출타자·<u>국외이주자</u>는 제외한다.</p> <p>②(생략)</p>	<p>제3조(지급대상 및 시기)</p> <p>①-----<u>시 관내</u>-----</p> <p>-----<u>국외이주자</u>-----</p> <p><u>이주자 및 기초노령연금수급자</u>-----.</p> <p>②(생략)</p>	<p>제3조(지급대상 및 시기)</p> <p>①-----</p> <p>-----<u>국외이주자</u>-----.</p> <p>②(생략)</p>

[수정안 포함]

부천시 장수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

부천시 장수수당 지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 중 “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”를 “제4조에 따라”로 한다.

제2조 본문 중 “용어의 정의는”을 “용어의 뜻은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1호 중 ““장수노인”이라 함은”을 ““장수노인”이란”으로 하며, 같은 조 제2호 중 ““장수수당”이라 함은 이 조례에 의하여”를 ““장수수당”이란 이 조례에 따라”로 한다.

제3조제1항 본문 중 “부천시 관내”를 “시 관내”로 한다.

제4조제2항 중 “만85세”를 “만 85세”로 하고, “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”를 “제5조에 따라”로 한다.

제5조제1항 중 “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”을 “별지 제1호서식의”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“위임 받은 자(위임장 소지자)”를 “위임 받은 자(위임장을 소지한 자를 말한다)”로 한다.

제6조제1항 중 “제5조 규정에 의한”을 “제5조에 따른”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“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”를 “제1항에 따라”로 한다.

제7조제1호 중 “부천시 관할”을 “시 관할”로 하고, 같은 조 제3호 중 “거부했을 때”를 “거부하였을 때”로 하며, 같은 조 제3호 중 “사망했을 때”를 “사망하였을 때”로 하고, 같은 조 제4호 중 “기타 부정한 방

법에 의하여”를 “그 밖에 부정한 방법에 따라”로 하며, “발견 되었을 때”를 “발견되었을 때”로 한다.

제9조제1항 중 “시행에 관하여 필요한”을 “시행에 필요한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“본 조례”를 “이 조례”로 하며, “부천시의 예산”을 “시 예산”으로 한다.

별지 제1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[별지 제1호서식]

장수수당 지급 신청서						
대상자	성명		주민등록번호		전화번호	
	주소					
수당계좌	은행명		계좌번호		예금주	
<p>「부천시 장수수당 지급 조례」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장수수당을 신청합니다.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년 월 일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신청인 (인)</p> <p>부천시장 귀하</p> <p>※ 계좌번호 확인이 필요하오니 통장을 지참하시기 바랍니다.</p>						

210mm×297mm(일반용지 60g/m²)